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개 선 요 구

제 목 역량평가 미 통과자에 대한 과도한 승진기회 제한

기 관 명 충청남도

내 용

충청남도는 2016년 1월부터 5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역량평가 통과(pass)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. (2014 ~ 2015년에는 인사에 ‘참고’ 자료로 반영)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8조의5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(역량평가)하여 승진임용·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」 제24조의5 규정에 따르면 충청남도지사는 5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량교육·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4 ~ 2015년 역량평가 시범실시를 거쳐 2016년부터 국·과장급(4급 및 5급)은 통과제(5점 만점 중 2.5점 이상 취득 시 승진

가능), ○○급(6급)은 이수제(역량교육 이수)를 적용하여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다.

그런데 2016년 역량평가 통과제를 승진인사에 도입하면서 연간 1회만(10월) 역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[표]에서와 같이 2016년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4급 승진후보자의 경우, 이후 3회의 승진심사가 있었지만 승진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승진인사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.

[표] 역량평가 시기 대비 승진인사 운영 현황

구분	평가 시기	승진인사 시기	비고
4급으로의 승진	2016. 10. 27. ~ 10. 28.	2016. 12. 27. 2017. 1. 24. 2017. 6. 26.	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

[개선]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승진후보자에 대해 부족역량에 대해서만 재평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, 장기간 재평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과도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역량평가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.